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7 선고 2023나2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7 선고 2023나2423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43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변론 종결 2024. 10. 10.

판결 선고 2024. 11. 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43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2, 3, 4, 6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4. 접수 제141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1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2, 3, 4, 6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4. 접수 제141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2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각 별지를 이 법원 각 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담보로 제공된 C 소유의 부동산은 원주시 AB리(이하 'AB리'라고만 한다) R 대 613m², 2) S 창고용지 1,121m², 3) 별지1 목록 기재 2, 3, 5, 6 부동산이었는데, 위 R 대 613m²는 2022. 12. 27. 별지1 목록 기재 1, 7 부동산으로, 4) S 창고용지 1,121m²는 2022. 9. 15. 별지1 목록 기재 4, 8 부동산으로 5) 각 분할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다.

라.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4. 5. 9. 별지1 목록 기재 5, 7, 8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4. 7. 3.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AC). 6) 2) 대한민국은 2024. 6. 26. 별지1 목록 기재 5, 7, 8 부동산 및 지장물의 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571,140,980원을 공탁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년 금제624호). 7) 3) 피고들은 근저당권자로서 2023. 1. 3. C가 대한민국에게 갖는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타채18141호). 8) 』

○ 제1심판결 제3면 "[인정근거]" 부분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4행의 "따라서"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2, 3, 4,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소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탁관)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6행의 "2022. 3. 3."을 "2021. 3. 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9행의 "2022. 7.경"을 "2021. 7.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7행의 "각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O조합, A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합계는 931,699,000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2022. 9. 1.자 원고 준비서면에서 AE감정평가법인의 가격자문보고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위와 같다고 진술을 한 점, 피고도 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표4]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9)

C	별지1 목록 제1항 (R 토지)	504	294,240,000
별지1 목록 제7항 (AF 토지)	109		
별지1 목록 제2항 (R 건물)	114.4	20,592,000	
별지1 목록 제3항 (R 건물)	74.38	18,595,000	
별지1 목록 제4항 S 토지)	733	538,080,000	
별지1 목록 제8항 (AG 토지)	388		
별지1 목록 제5항 (S 건물, T동)	158.4	28,512,000	
별지1 목록 제6항 (S 건물, U동)	176	31,680,000	
합계	931,699,000		
F	별지2 목록 제1항 (V 토지)	202	53,449,200
별지2 목록 제2항 (V 건물)	70.62	18,573,060	
별지2 목록 제3항 (W 토지)	270	98,847,000	
별지2 목록 제4항 (W 건물)	179	38,485,000	
별지2 목록 제5항 (X 토지)	404	147,904,400	
합계	357,258,660		

○ 제1심판결 제10면 13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표1] 순번 5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K, L는 사실확인서10에서 'C가 2021. 3. 5. Q에게 26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 N이 집을 매각하여 Q에게 약 3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C가 Q의 대표이사인 G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여 2021. 3.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즉 C측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변제받은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하였는바, 이는 C의 Q 및 G에 대한 금원 이체 내역11과 부합하고,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자인 K, L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N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¹²⁾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N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증약정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날인하기도 하였는바¹³⁾

N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Q에게 위 약 3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Q의 대표이사는 G, 사내이사는 피고 A이고¹⁴⁾ K과 L는 Q와 동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¹⁵⁾ K과 L는 위와 같은 Q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Q 또는 Q의 대표이사 G에 대한 변제를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1심판결 제12면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한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및 F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에 대한 상당한 채무(1,986,469,065원)를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시키는 대신, 피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피담보채무(1,704,420,224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에게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사해의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원중찬

판사박동욱

판사홍순건

별지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1 목록 기재 1, 2, 3, 4, 6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별지1 목록 기재 5, 7, 8 부동산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채권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양도 및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

3)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4 부동산

4) 갑 제18호증의 2 제7면

5) 갑 제18호증의 3 제6면

6) 갑 제14호증

7) 갑 제15호증 참조

8) 갑 제16호증 참조

9) 위와 같이 분할된 내역을 반영한다.

10)을 제7호증의 1, 2 참조

11)을 제1호증 및 이 법원의 A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제3면 참조

12)을 제13호증 참조

13) 갑 제1호증의 1 참조

14)을 제11호증 참조

15)을 제7호증의 1, 2 참조